

##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(2022. 7. 5.~7. 12.) 중 우리 재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.

### □ 교섭 요구 노동조합

연번	명칭	대표자	교섭요구일자	조합원수
1	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	현정희	2022년 7월 5일	19명

### □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- 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상기 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1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처(054-841-35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7월 13일

(재)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

